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3. 3. 29 선고 2022가단1539 판결 [사해행위취소 등]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연

피 고 1. B

2.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D

변 론 종 결 2023. 3. 22.

판 결 선 고 2023. 3. 29.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가. 피고 B와 E(F생)이 2021. 10. 7. 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B는 E에게 춘천지방법원 태백등기소 2021. 10. 7. 접수 제488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태백등기소 2022. 9. 13. 접수 제397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청 검사는 2022. 7. 29.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 E을 ‘2019. 8. 12.부터 2021. 8. 26.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원고 명의로 합계 9,57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 대출기관들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의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하였다. 위 법원은 2022. 9. 16. 기소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원고를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형사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기소에 따른 형사재판 절차에서 그 혐의를 모두 자백하였다.

나. 원고는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 자신의 법률상 배우자였던 E을 상대로 손해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23. 3. 22. 위 법원에서 ‘E은 원고에게 95,700,000원과 이에 대한 2022.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3가단69 판결).

다. 원고는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 E을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22. 9. 20.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1드단301 판결). 위 가사판결은 2022. 10. 6. 확정되었다.

라. E은 2021. 10. 7.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태백등기소 접수 제4881호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피고 B는 2022. 9. 13. 피고 회사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태백등기소 접수 제3972호로 채권최고액 2,600만 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피고 회사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E이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을 증여한 것은 E의 일반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이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B는 E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피고 회사는 피고 B에게 그가 채권자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사해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가 E에 대하여 판결에 기초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는 원고가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에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와 E의 무자력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E이 원고에 대하여 9,570만 원의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E에게 이 사건 건물 외에 다른 재산이 없었던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E은 원고에게 손해배상채무 9,570만 원을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건물을 피고 B에게 증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일반채권자인 원고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켰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채권자인 원고와의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3) E과 피고들의 사해의사

가) 사해의사의 추정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고, 이를 이전받은 사람이 악의가 없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E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건물을 피고 B에게 증여함으로써 피고 B가 이를 무상으로 이전받았다.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수익자인 피고 B와 전득자인 피고 회사의 사해의사 또한 추정된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E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피고 B에 관하여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는 E과 원고의 아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원고, E, 피고 B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앞서 가)항에서 본 추정을 뒤집고 피고 B가 선의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회사에 관하여

을나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 회사는 금융감독원에 대부업등록을 하고 금전대부업 등을 하는 법인일 뿐 E이나 피고 B와 별다른 관계가 없는 점, 피고 회사는 피고 B의 대출신청에 따라 피고 B에게 2,000만 원을 대출하여 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설정 당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고 위와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선의의 전득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원상회복의 방법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채권자가 스스로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원물반환을 구하는 것까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그 경우 채권자는 원상회복 방법으로 가액배상 대신 수익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선의의 전득자인 피고 회사를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졌으나 원고는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피고 B를 상대로 그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악의의 수익자인 피고 B는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써 E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악의의 수익자인 피고 B는 E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영현

별지